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17404
----------	-------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상정	소위 심사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14813	조계원의원 등 10인	'25.12.3.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6.2.23.)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6.2.24.)
	2215003	임오경의원 등 10인	'25.12.8.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6.2.23.)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6.2.24.)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2. 26.)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징계 등 처벌조치가 강화되어 선수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아직도 불합리한 계약 관행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이 국가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사업으로 ‘체육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을 정하고 있을 뿐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두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하며,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등 공제사업을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 공제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시책 수립 의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담기관이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제4항 신설).

다.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적립하도록 하고, 적립금은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공제사업의 시행, 준비금의 적립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신설).

마.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복지증진”을 “복지증진 및 권리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공제 사업”을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填)
2. 공제사업의 시행
3.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u>복지증진</u>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 ----- -----<u>복지증진</u> <u>및 권리 보호</u>-----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전담기관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p>1. (생략)</p> <p>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인 <u>공제 사업</u>(공제보험을 포함한다)의 관리·운영</p> <p>3. ~ 5. (생략)</p> <p>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8조(전담기관의 사업)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공제사업</u>----- -----</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전담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체육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업</u></p>

<신 설>

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은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료,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18조의2(준비금의 적립) 전담기관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3(이익금의 처리) ① 전담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填)

2. 공제사업의 시행

<신 설>

3. 제18조의2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18조의4(「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